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02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김정재 · 김승수 · 고동진
엄태영 · 강명구 · 정점식
이인선 · 한지아 · 김선교
서명옥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은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이
고, 보호기간 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
장할 수 있으며, 연장심사 시 제출하는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
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둬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
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
임(안 제14조제4항·제5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의2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해당 신기술을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는 해당 신기술을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4조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신기술을 지정·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부정사용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공고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⑥ ~ ⑧ (생 략)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u>(신 설)</u> <u>1의2.</u> (생 략) 2. ~ 6. (생 략)	<u>게 적용하여야 한다.</u>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4조제4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신기술을 지정·고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u> <u>1의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	---